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6.12.08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60% 수준</td></tr><tr><td>하나 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수준</td></tr></table></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미만</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90% 이상</td><td>퇴직연금 증권모신탁, 블루칩 증권모신탁</td></tr></table></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60% 이상</td><td>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td></tr></table></td></tr>
</table>

	하나 UBS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60% 수준(수준이라 함은 ± 10% 범위 내를 말함)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하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2) 투자제한** **<추가>**	**나. 모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별첨1 참조>** **2)투자제한** **<별첨2 참조>**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60% 수준</td></tr>
<tr><td>하나 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단위:%)
<표>
</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60% 이상</td></tr>
<tr><td>하나 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미만</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별첨3 참조>

<삭제>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
<td>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td>
<td>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 년 12 월 8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td>
</tr>
</table>

	<신설>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채권모투자신탁(투자신탁재산의 60% 수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채권모투자신탁,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

<table>
<tr><td></td><td>추구하는 한편, 투자신탁재산의 40% 수준을 태극블루칩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td><td>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태극 블루칩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형)입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 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채권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수준)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투자신탁재산의 40% 수준을 태극블루칩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형) 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60% 수준</td><td>■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td></tr>
</table>
</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 연금채권모투자신탁,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태극 블루칩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하나 UBS</td><td>60% 이상</td><td>■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td></tr>
</table>
</td></tr>
</table>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하나 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 투자신탁[주식]	**40% 수준**	■ 우량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이득을 추구 ■ 기본적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중 업종 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신설>		

파워중기채권 증권모 투자신탁[채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1.8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 전망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 ■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 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 ■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
하나 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 투자신탁[주식]	**40% 미만**	■ 우량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이득을 추구 ■ 기본적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중 업종 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기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금리 및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	국내 채권 60%이상

			탁[채권]	으로 대응하여 이자 수익 추구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3.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수준(수준이라 함은 ±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수준으로 한다	1. 하나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 별첨1.**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별첨2**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및 환매 조건부매수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별첨3

3)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1.8 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